

요약

메르스 대응 지침(4-2판) 주요 개정 사항 ('17.3.17)

분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메르스 개요	메르스 국외 발생 동향	2017년 2월 28일 기준으로 국외 발생 동향 업데이트	보완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발생 현황 비교	사우디아라비아의 2016년 메르스 발생 현황 추가 비교	보완
메르스 진단	메르스 확인진단법 및 특이 유전자	○ 병원체 MERS-Co virus ○ 특이유전자 : upEorf1aorf1bN ○ 확인진단법 - Real-time RT-PCR/RT-PCR에 의한 최소 2개 특이 유전자 확인 - Real-time RT-PCR/RT-PCR에 의한 1개 특이 유전자 확인 + 다른 부위 1개 염기서열확인 ○ 비교 - 보건환경연구원은 Real-time RT-PCR에 의해 upE, orf1a 확인 - 염기서열확인가능 부위 : RdRp, N	2015년 WHO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보완
	메르스 검체 채취 방법 - 상기도, 하기도, 혈액 3종 채취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찰물과 구인두도찰물을 함께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메르스 유전자검사의 검출율을 높이기 위해 검체채취에 관한 관리지침 내용을 보완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방법	기관별 보고사항	검역소 의심환자 접촉자 명단 항공기배치도, 건강상태질문서 포함 추가	시행내용 현행화

연 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의심 환자 발생시 대응 방법	신고주체별 대응 주관보건소	검역소 의심환자 역학조사, 의심환자 이송 접촉자 명단 조사 및 입력 추가	시행내용 현행화
의심 환자 역학조사	의심 환자 역학조사 절차	○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될 경우 지체없이 출동 ○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시행내용 명기
	의심환자 접촉자 역학조사 및 관리 ○ 접촉자 범위 설정, 분류 및 등록 - (조사범위) 증상 발생 후 이동경로에 따라 밀접접촉자 범위 설정, 분류 - (명단확인) 접촉자를 확인하여 명단 작성 - (명단등록) 확인된 접촉자 명단을 입력	○ 접촉자 범위 설정, 분류 및 등록 - (범위설정) 의심환자 증상발생 후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접촉자 범위 설정 및 분류 * 밀접 또는 일상 접촉자로 분류시 접촉 시간 및 접촉 공간, 접촉 정도에 따라 분류 - (접촉자 조사) 증상 발생 후 이동경로, 이동수단에 따라 밀접접촉자를 조사하여 ‘메르스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 증상 발현 시부터 격리입원 전까지 ‘메르스 접촉자 조사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기록 - (명단등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입력 * 단,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경증 호흡기 증상인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확진 전에는 입력하지 않음	<u>역학적 연관성 높거나 폐렴 또는 ARDS</u>있는 의심환자 접촉자 조사 시 조사방법 및 명단 입력 철저히 하여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

연 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검역단계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사항	이송 전 예약교통편 확인 등 필요조치	○ (입국 및 통관 조치) - 항공사 직원인 경우 항공사에 통보 ○ (이송 전 필요조치) - (환승객) * 환승 항공편 확인 후 항공사에 미탑승 조치 알림 및 재예약 협조 요청	보완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 48~72시간 간격 PCR 검사에서 2회 음성 시 해제 등 - (퇴원시 조치) 잠복기 동안의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	○ (격리해제 기준)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증호흡기증상 환자가 격리 입원 후 폐렴이 확인된 경우는 2차 검사까지 진행 ○ (격리해제 시 조치)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 및 격리일정* 확인 * 의료기관은 환자 격리 해제 전 반드시 긴급상황실에 통지 ○ (격리해제 또는 검사 일정 변경시) - (의료기관) 검사횟수 및 격리해제에 관해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긴급상황실과 협의 - (긴급상황실) 중앙역학조사관에게 보고, 2차 검사 시행 여부 및 격리해제 여부 결정 ○ (퇴원 시 조치) - (긴급상황실) 항공편 재예약관련 항공사 협조 요청 및 재예약 항공편, 공항이동 등 확인 사항을 의료기관에 전달 * 공항으로 재이송 소요 비용은 진료비 청구 시 교통비를 포함하여 청구	<u>역학적 연관성 낮고 경증 호흡기 증상</u> 의심환자의 세부 대응절차를 정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

연 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격리해제 시 조치 (지역사회 /의료기관 인지)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 48~72시간 간격 PCR 검사에서 2회 음성 시 해제 등 - (퇴원시 조치) 잠복기 동안의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	○(격리해제 기준)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증호흡기증상 환자가 격리 입원 후 폐렴이 확인된 경우는 2차 검사까지 진행 ○(격리해제 시 조치)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 및 격리일정* 확인 * 의료기관은 환자 격리 해제 전 반드시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는 시·도 역학조사관에게 알리고 긴급상황실에 보고 ○(격리해제 또는 검사 일정 변경시) - (의료기관) 검사횟수 및 격리해제에 관해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 시·도역학조사관에게 보고, 2차 검사 시행 여부 및 격리해제 여부 결정 * 보건소는 결정사항을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로 유선보고	<u>역학적 연관성 낮고 경증 호흡기 증상</u> 의심환자의 세부 대응절차를 정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
부 록	메르스 바로알기 안내문 & 홍보물	메르스 발생국가 수정 메르스 포탈 문구 삭제	보완
	메르스 안내 표준 문구	메르스 포탈 문구 삭제	보완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감염예방관리 청소 및 환경관리	◦ 식약처 허가 리스트 삭제 ◦ 소독제의 선택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61호) 내용 추가	보완

연 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부 록	개인보호구 충족조건 및 적응상황 - (PAPR) 필요시 사용 - (보안경) - (전신보호복)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개인보호구 충족조건 및 적응상황 ◦ PAPR(N95등급 마스크 대체) ◦ (보안경) 김서림방지 및 굽힘 방지 ◦ (전신보호복)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되는 제품	보완
서 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변경에 따른 메뉴 구성 설명	보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병실 현황	2017.3.6.일 기준 현황으로 변경	보완
	메르스 의심환자 역학조사서	낙타접촉력(쌍봉낙타, 단봉낙타, 모름) 추가 기저질환과 흡연여부 분리 의심사례 분류(역학적연관성/증상) 추가 의심환자가 검역소에 있는 경우 추가 운송차량 검역소 구급차 추가 출입국 시 문자메세지 수신 여부 중복 삭제	역학조사 시 낙타접촉력이 있을 경우 낙타종류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에 따라 신속대응하기 위함